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비디오물업자 영화진흥위원 자격 제한 삭제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42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7. 17.

다. 회 부 일: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 9인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비디오물영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및 영화업자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서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 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u>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u>	② ----- ----- ----- ----- ----- ----- <u>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8조¹⁾는 영화진흥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에는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²⁾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무원·정당원 등과 함께 ‘비디오물영업자’를 명시하고 있음.³⁾ 또한, 제17조⁴⁾는 영화업자가 스스로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영화업자·비디오물영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거나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영화진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2013.7.16.> *영화업자 결격 삭제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2024년 8월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명단은 [참고] 자료 참조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진흥사업의 계획·집행과정 등에 있어서 해당 위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비디오 산업에 대한 전문성·현장성을 보유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전문적 분석·판단과 현장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응역량 강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9인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비디오물영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및 영화업자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영화·비디오물 진흥정책에 반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5)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13년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영화업자’를 삭제하고, 영화업자가 최대 2인까지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법률 제11902호, 2013.7.16, 일부개정).

특히, 비디오물영업자의 경우 현재 영화업자와 달리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해당하는 OTT 콘텐츠의 확산 등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영업자를 영화업자보다 더 강하게 규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봄.

아울러,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① 현행법 제12조의2⁶⁾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또는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영화·비디오물업자 제한규정의 삭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⁷⁾ 및 게임물관리위원회⁸⁾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현업 종사자의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7)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여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또한 별도로 현업자의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반면, 방송통신위원회⁹⁾의 경우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¹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¹¹⁾와 같이 규제기관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 등의 경우 업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그 대신 면직사유를 신설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도, 위 면직사유 중 ②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임에 비해 ①의 경우 위원이 현행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주체나 절차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명단

※ 총 9명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영화업자 음영표시) 2024. 8. 기준

직 위	사 진	성 명 출생년도	임 기	주요 경력
위원장 (상임)		한상준 (‘58년생)	‘24.6.5.~ ‘27.5.23. *위원 임기 (‘24.5.24.~ ‘27.5.23.)	• 前 서울예대 출강(‘09~‘23) • 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07~‘09) • 前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연구교수(‘00~‘03) • ‘영화음악의 이해’(‘17년), ‘트뤼포(시네필의 영원한 초상)’(‘22년) 등 출간
부위원장 (비상임)		김선아 (‘70년생)	‘22.1.7.~ ‘25.1.3. *위원 임기 (‘22.1.4.~‘25.1.3.)	• 現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부교수 • 現 (주)크레용필름 대표(‘09.4월~) (영화업자) • 영화 <역도산>(‘04), <지구를지켜라>(‘03), <봄날은 간다>(‘02) 등 프로듀서, <어느날>(‘17) 등 기획/공동제작
위원 (비상임)		김동원 (‘78년생)	‘24.6.25~ ‘27.6.24.	• 現 서경대 초빙교수 겸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장 • 前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22) • 前 태원 엔터 부사장(‘16~‘21) •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19), 드라마 <편의점샷별이>(‘20) 제작
위원 (비상임)		김동현 (‘71년생)	‘22.1.4.~ ‘25.1.3.	• 前 (주)메리크리스마스 영화사업본부 본부장 • 前 (주)인벤트스톤 영화제작사 공동대표 • 前 (주)시너지하우스 투자 및 배급팀 이사 • 前 (주)시네마서비스 투자, 배급, 마케팅 실장
위원 (비상임)		김동현 (‘74년생)	‘22.1.4.~ ‘25.1.3.	• 現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 前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 • 前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위원 (비상임)		김이석 (‘68년생)	‘22.1.4.~ ‘25.1.3.	• 現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 現 동의대 영화·트랜스 미디어 연구소장 • 前 (재)영화의전당 이사(‘19~‘21)
위원 (비상임)		안병호 (‘78년생)	‘22.1.4.~ ‘25.1.3.	• 前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15~‘21) • 前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14~‘15) • 촬영감독: 영화 <마더>(‘09), <똥파리>(‘08), <오피스>(‘14), <특종:량첸살인기>(‘17) 등 참여
위원 (비상임)		양윤호 (‘66년생)	‘24.5.24.~ ‘27.5.23.	• 現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대중상영화제 집행위원장(‘22~) • 영화감독: <유리>(‘96), <바람의 파이터>(‘04), <홀리데이>(‘06) 등 연출
위원 (비상임)		최낙용 (‘64년생)	‘22.1.4.~ ‘25.1.3.	• 現 시네마 6411 대표(‘17.5월~) (영화업자) • 現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19.2월~) • 前 영화사 백두대간 부사장(‘97~‘13) • 영화 <노무현입니다>(‘17), <노화찬6411>(‘21) 등 제작